

조치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4.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5.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					
6. 조치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7.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용 감 독 원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조치의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는 의견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하는 문서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아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감리위원회	일 시	년 월 일 시 분(예정)
	장 소	
증권선물위원회	일 시	년 월 일 시 분(예정)
	장 소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